사례별 문답

▣ 시행령 "아"목에 관한 내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Q1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에는 어떤 사업이 해당되나요?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시행령 "자"목에 관한 내용

Q2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다른 사업자"란 도급인(사용사업주)을 말하며 "다른사업자의 사업장"이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 관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Q3 **"그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며 "시설 또는 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그 사업자"란 도급인(사용사업주)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 또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조·수리, 건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기계장치, 건물 등 용역제공과 연관성이 있는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적용되나요?**

☞ 예,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Q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용역에 대한 내용

Q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용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공급하는 근로자파견 용역을 말합니다.

- '24년 6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2,200여개입니다.(허가업체 명단은 공공데이터 포털 >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현황」으로 검색하면 사업체 명단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2>

허가번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생년월일:
5.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사업소현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와 같이 (신규·변경·갱신)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업체 명단

(출처 : 고용노동부) **(2024.6.30.현재)**

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기한
1	(유)고려**	전라북도 ****군 ****읍 ****리 ***-*	1999-**	2023-01-19~ 2026-01-18

▣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사업의 요건

파견사업주 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 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전용면적 20㎡의 사무실 ▸ 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중개업 등 겸업금지 ▸ 특정한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파견업무범위 및 파견기간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내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 사유로도 파견금지 ・(출산・질병・부상)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내에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Q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요건 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고, 해당 업체를 면세적용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고용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세적용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Q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인가요?

☞ 개정된 시행령 「자」목 단서 조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만 과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 근로자파견의 판단 원칙 >

○ **(실질판단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이에 따라 도급인등과 수급인등 사이의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급인 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인 등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 **(종합고려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 부분에서 제시된 **각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판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 업종·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

Q9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의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또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과 원청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단순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10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5.1.1.이후 공급분부터는 단순인적용역 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1 기존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을 제공한다면,
- 법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폐업 신고한 후, 새롭게 면사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합니다.

Q12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Q13 인력공급을 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Q14 운송 또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도 면세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나요?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운송이나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Q15 면세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16 도급업, 임가공업도 면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정상적인 도급업, 임가공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도급인이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Q17 사급의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 사급이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업자로부터 받는 방식이며, 무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인력만을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사급의 개념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계열사 또는 하청(협력)업체에 공급하는 계약 형태로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방식

□ 사급의 장점

원청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하청(협력)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원부자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절감이 가능

□ 사급의 종류

○ 유상사급(有償賜給)

- 원청업체가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하청(협력)업체에 유상(원부자재 대금을 받고)으로 공급하고, 하청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을 때 임가공비에 원부자재 대금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무상사급(無償賜給)

- 원청업체가 하청(협력)업체에게 원부자재를 무상(원부자재 대금을 받지 않고)으로 공급하고 하청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을 때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방식

□ 관련 예규

▣ 서면 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961, 2010.12.31.
사업자가 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자재(이하 '사급자재')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동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Scrap, 고철)의 시가를 수급인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시공·정산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22601-1644, 21988.09.15.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Q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착오 또는 무지로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서면-2020-법인-5509, 202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Q19 파견법에 따른 인력공급업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에 대해서만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파견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Q20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 파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이 면세 적용되는 기준일입니다.